

특별공급 청약안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
□ 청약 일정

구분	신청일자	접수장소 및 시간	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2022.06.14.(화) ~2022.06.15.(수)	• 청약Home 인터넷 09:00 ~ 17:30	•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(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"청약홈" 검색)

□ 주택형별 대상 세대

구분	84A	84B	84C	110A	110B	합계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13	6	-	2	2	23

□ 신청대상자 및 유의사항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)

구분	내용								
신청 자격 (각 항목 모두 충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)하고 있는 세대주 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(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)</li> <li>무주택자 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)</li> <li>일반공급 1순위 자격 충족 -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(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</li> </ul>								
당첨자 선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일반공급 가점제 산정기준을 적용,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(총점 84점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64 942 1349 105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무주택기간</th> <th>부양가족수</th> <th>청약통장 가입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배점</td> <td>최저 : 2점(1년 미만) ~ 최대 : 32점(15년 이상)</td> <td>최저 : 5점(0명) ~ 최대 : 35점(6명)</td> <td>최저 : 1점(6개월 미만) ~ 최대 : 17점(15년 이상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-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</li> <li>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</li> </ul>	구분	무주택기간	부양가족수	청약통장 가입기간	배점	최저 : 2점(1년 미만) ~ 최대 : 32점(15년 이상)	최저 : 5점(0명) ~ 최대 : 35점(6명)	최저 : 1점(6개월 미만) ~ 최대 : 17점(15년 이상)
구분	무주택기간	부양가족수	청약통장 가입기간						
배점	최저 : 2점(1년 미만) ~ 최대 : 32점(15년 이상)	최저 : 5점(0명) ~ 최대 : 35점(6명)	최저 : 1점(6개월 미만) ~ 최대 : 17점(15년 이상)				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.</li> </ul>								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, 관계법령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특별공급 청약안내 **노부모부양 특별공급**

▣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-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-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- 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공무원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	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등 '전체포함'으로 발급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 존·비속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•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부적격 소명자료		○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